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승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68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0.

발 의 자:조승래·정준호·장철민

박정현 • 황정아 • 박용갑

박상혁 · 강준현 · 박홍배

노종면 · 장종태 · 김현정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·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는 곳으로서, 국립묘지가 설치된 주 변지역의 엄숙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.

그러나 현행법에는 국립묘지 주변지역의 엄숙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규정이 미비하며,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.

이에 국립묘지가 설치된 주변지역을 호국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, 호국경관지구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여,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려는 것임(안 제11조의11 및 제11조의12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의11 및 제11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1조의11(호국경관지구의 지정) ① 시·도지사는 국립묘지 주변에 대하여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하고, 호국사상 앙양을 위하여 국립묘지 주변지역을 호국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호국경관지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호국경관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호국경관지구의 구역, 면적, 지정 연월일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 시하여야 한다.
 - ④ 호국경관지구의 지정 절차, 호국경관지구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의12(호국경관지구 지원사업) ① 시·도지사는 호국경관지구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호국경관지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- ② 시·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호국경관지구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국경관지구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호국경관지구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국경관지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호국경관지구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1조의11(호국경관지구의 지정)
	① 시・도지사는 국립묘지 주
	변에 대하여 정숙한 분위기를
	유지하고, 호국사상 앙양을 위
	하여 국립묘지 주변지역을 호
	국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.
	② 시・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
	호국경관지구를 지정하거나 그
	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면 관계
	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
	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
	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
	<u>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
	③ 시・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
	호국경관지구를 지정하였을 때
	에는 호국경관지구의 구역, 면
	적, 지정 연월일, 그 밖에 필요
	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
	④ 호국경관지구의 지정 절차,
	호국경관지구에 설치할 수 없
	는 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
	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u><신 설></u>	제11조의12(호국경관지구 지원사

- 업) ① 시·도지사는 호국경관 지구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호국 경관지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② 시·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호국경관지구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국경관지구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호국경관지구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국경관지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호국경관지구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